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 심 사 보 고

2004. 12. 15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1. 審査經過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4년 11월 20일 · 종로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04년 11월 22일
- 다. 상정일자 : 제146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2004. 12. 15) 재무건설위원회 상정 · 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 도시관리국장 김 명 식)

가. 제안이유

- 열악하고 노후한 불량주택을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물론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하여 충신동 1번지 일대를 주택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코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1)용도지역변경

구 분	용도지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제1종 일반주거지역	종로구 충신동 1번지 일대	29,679.07㎡	서울시도시주거 환경정비기본 계획에 의함
변 경	제2종 일반주거지역			

2) 공공시설의 위치 및 규모

구 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m ²)	비 고
계			4,858.52	
변경	도로	충신동 1-280번지 및 충신동 1-145번지 일대	3,374.16	중로 3 1 소로 1-1
신설	녹지	충신동 1-150번지 일대	1,484.36	

3) 건축계획

위 치	대지면적 (m ²)	공공시설 면적(m ²)	인면적(m ²)	용적률 (%)	건폐율 (%)	층수	세대수	용도
충신동 1번지 일대	24,820.55	4,858.52	76,207.66	210.36%	25.84%	지하2층/ 지상12층 이하	분양 502 임대 103	공동주택

3. 質疑 및 答辯 要旨 : 생 략

4. 意見 採擇 : 의 건 없 음

5. 其他 必要한 事項 : 없 음